

2026년도 제1·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도 제1·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시험명	시험 방법	선발 예정			시 험 과 목	
		직렬(직류)	직급	인원		
총계					25	
제1회 임용 시험	소계			24		
	공개경쟁	교육행정	9급	15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행정 (장애인)	9급	2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1		
		전 산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 업 (일반기계)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소 계			1			
제2회 임용 시험	경력경쟁 (기술계고 구분모집)	공 업 (일반기계)	9급	1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제도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일이 2026. 6. 20.인 경우, 2026. 4. 30.가 기준일이 됨.

※ 제2회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 물리는 물리학 I 에서 출제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5과목	3과목
시험시간	110분 (10:00 ~ 11:50)	60분 (10:00 ~ 11:00)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연령

구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구분모집)은 2026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9.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1. 2026년 1월 1일 전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 되어야 함)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 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 가능함(거주지 제한 없음)**

라. 학력·경력·성별: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제한 없음

마. 자격증 제한 [사서 직렬]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해야 함

시험명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자격증 등 제한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사서	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통합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발급(취득)일’ 기준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제2회 임용시험)

-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자격조건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공업(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 50%이상 이수한 자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류) 관련 전문교과(군)
9급	공업	일반기계	기계 교과(군) / 재료 교과(군)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 직렬(류)과 관련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2]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위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을 이수한자 중 다음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 ②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③ 아래의 성적 기준을 충족 한 자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전(全)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는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9.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교육청 총무과로 제출 기간 내 접수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4.13.(월) 09:00 ~ 4.17.(금) 18:00 [취소마감일 : 4.20.(월) 18:00]	필기시험	5.29.(금)	6.20.(토)	7.17.(금)
		면접시험	7.17.(금)	7.30.(목)	8.13.(목)
제2회 임용시험	8.24.(월) 09:00 ~ 8.28.(금) 18:00 [취소마감일 : 8.31.(월) 18:00] * 학교장 추천서 제출: 7.13.(월) 09:00 ~ 7.17.(금) 18:00	필기시험	10.16.(금)	10.31.(토)	11.17.(화)
		면접시험	11.17.(화)	11.27.(금)	12.4.(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www.use.go.kr>) '교육·행정정보> 시험공고> 지방공무원임용'에 공고합니다.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 필기시험 결과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6.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접수처: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울산광역시교육청" 선택 → 바로가기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 지원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나.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 원서가 접수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응시표 출력기간
제1회 임용시험	5. 29.(금) 10:00 ~ 6. 20.(토) 10:00까지
제2회 임용시험	10. 16.(금) 10:00 ~ 10. 31.(토) 10:00까지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응시표는 추후 면접시험에도 사용하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 【수정·취소】 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 시험전일 까지 가능)

-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가산점 적용 확인】**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생존장병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교육 행정	교육 행정	-	변호사	5%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5%
		기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3%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5%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 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 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	3%

※ 폐지·통합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제2회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5%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 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	3%

※ 폐지·통합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단,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임용대기 인력 미해소 등 인력운영여건이 어려운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습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1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다만, 교육행정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의 10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1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제 출제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공개-미회수)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인사혁신처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총 11과목]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인사혁신처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총 3과목]

-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정답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게시되며, 이의제기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등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www.use.go.kr>) ‘교육·행정정보 > 시험공고 > 지방공무원임용’ 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필요시 수정 테이프, 시계는 바늘[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손목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필기구)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블루투스

이어폰, 디지털시계,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전자담배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필기시험 답안은 매 문항마다 하나의 답만을 골라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르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안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이외의 필기구(적색펜, 연필, 샤프펜 등)로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 절차에 대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비위행위 발생으로 피해자 발생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제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안내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진출이 제한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접수기간

시험명	접수기간
제1회 임용시험	4. 13(월) 09:00 ~ 4. 17.(금) 18:00까지
제2회 임용시험	8. 24.(월) 09:00 ~ 8. 28.(금)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052-210-5723~5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 2026년 변경사항 >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제한 없음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 적용

※ 전문교과 이수 요건 미충족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규칙 [별표 12]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직렬 응시 가능,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미부여

< 2027년 변경사항 >

□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

변경 전(현행)
공통 과목 '한국사'

변경 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대체 ※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사 과목 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출제 문항수 개편

구분	기존(5과목 100문항)		변경(4과목 100문항)			
9급 공개 경쟁 임용	공통 과목	국어	20	공통 과목	25	
		영어	20	영어	25	
		한국사	20	한국사	'한능검 대체'	
	전문 과목	예)교육학	20	전문 과목	예)교육학	25
		예)행정법	20	예)행정법	25	

※ 기존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전문과목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개편)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항수 개편에 따른 공동출제 과목 출제 문항수 개편 및 필기시험 시간 연장

○ 문항수 개편

변경 전(현행)
과목당 20문항

변경 후
과목당 25문항

○ 필기시험 시간 연장

구분	시험시간	
	기존	변경
공개경쟁임용 (기록연구)	10:00~11:40(100분)	10:00~12:05(125분)
경력경쟁임용시험 (3과목)	10:00~11:00(60분)	10:00~11:15(75분)
경력경쟁임용시험 (2과목)	10:00~10:40(40분)	10:00~10:50(50분)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과목(2차)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변경

변경 전(현행)	변경 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예정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일반고(특성화학과 한정)의 졸업예정자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학과성적 기준 변경

변경 전(현행)	변경 후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등급이 2.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붙임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www.use.go.kr>) ‘교육·행정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 란에 공고 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문제출제 방법 및 공개여부, 응시원서 접수, 가산점 적용 등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제1·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 계획 공고』를 따릅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명	직렬	직류	계급	인원	세 부 내 용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	일반 기계	9급	1명	1. 시험과목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2026년도 기술계고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차 병합시험)
제2회 경력경쟁 임용 시험	9급	공 업 (일반기계)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기계일반, 기계제도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물리는 물리학 I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며, 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2 시험 일정

추천서 제출기간 (학교→교육청)	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13.(월) 09:00 ~ 7.17.(금) 18:00	8.24.(월) 09:00 ~ 8.28.(금) 18:00 [취소마감일 : 8.31.(월) 18:00]	필기 시험	10.16.(금)	10.31.(토)	11.17.(화)
		면접 시험	11.17.(화)	11.27.(금)	12.4.(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www.use.go.kr>) ‘교육·행정정보> 시험공고> 지방공무원임용’에 공고합니다.
- ※ 필기시험 점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6.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과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응시 자격

가.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학교장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9.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다.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 당해 최종(면접)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가. 추천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하되, 해당여부는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4년제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졸업 등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졸업 예정(2026학년도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합격은 취소됨

나. 추천 자격요건: 추천학과 및 전문교과 이수

1)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공업(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해당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학과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 ②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 할 수 있음

2)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 5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2]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전문교과 이수요건 대체 혹은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 가능

※ 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될 경우에도 해당(관련) 학과 여부는 충족해야 함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군) 세부기준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류) 관련 전문교과(군)
9급	공업	일반기계	기계 교과(군) / 재료 교과(군)

※ 추천 대상자가 이수한 교과목이 선발예정 직렬(류) 관련 전문교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17개 교과(군) 분류에 따름

▷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전문교과로 인정할 수 있음

다. 위의 ‘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 ②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③ 아래의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점수계산 방법 】 (지침 변경시 재안내)

•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sum(\text{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div \text{총 이수과목} \geq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전문교과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text{성취도 A 이수과목 수} \div \text{총 이수과목 수}) \times 100$

• <보통교과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 석차등급 = $[\sum(\text{과목별 학점} \times \text{과목별 석차등급})] \div \sum(\text{과목별 학점})$

※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전(全) 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라. 성적합산 기준

- ▶ (졸업자)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을 기준
-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기술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5 추천서 제출

가. 제출기간: 7.13.(월) 09:00 ~ 7.17.(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추천인원: 제한없음

다. 제출방법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재학 또는 졸업)로 신청하여야 하며,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교 → ① K-에듀파인 전자공문, ② 방문 제출,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은 불가합니다.

라. 제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 ☎ 052-210-5723~5728

마.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① K-에듀파인 전자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 추천 공문 ▣ 추천 현황표 1부(서식 1)
② 방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추천서 각 1부(서식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서식 3) ▣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 졸업(재학)여부와 성적(석차비율 기재)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 각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능경기대회 입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2026년도 제1·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름

- 접수처: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울산광역시교육청’ 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8. 24.(월) 09:00 ~ 8. 28.(금) 18:00 (8. 31.(월) 18:00까지 취소)

라. 응시수수료: 5,000원(9급)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7 기타 사항

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확인 결과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응시
원서 미접수 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므로,
추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의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천대상자들이 기한 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고등학교

2. 추천자 현황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전문교과 이수현황		졸업 (예정)일	대회명	수상 내역	수상일
				교과(군)	비율				
1	○○○ (2000.00.00)	공업 (일반기계)	기계과	기계	00%	2027.00.00.	○○기능경기대회	금상	0000.00.00
2									
:									

○ 성적우수자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자격증	전문교과 이수현황		성적				졸업 (예정) 일
							성취평가제 미적용	성취평가제 적용			
					평균석차 비율	보통교과		전문교과			
						평균석차 등급(비율)		전과목 평균B이상 환산점수	성취도 A비율	성취도 A비율	
1	○○○ (2000.00.00)	공업 (일반기계)	기계과	○○	기계	00%	해당 없음	0.0(00%)	0.0	00.0%	2000. 00.00.
2											
:											

3. 추천인원 및 학교담당자 현황

직렬(직류)	학교 내 지원자수	최종 추천자수	추천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공업(일반기계)	0	0	○○○	○○○	000-0000 (000-0000-0000)	○○@○○.kr

○○○○고등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 교 장 추 천 서

추천 직렬	공업(일반기계)
-------	----------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주민등록번호	-			
학력사항	출신학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등/ 명)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등/ 명)
		전문 교과	성취도 평균B이상	해당 () 미해당 ()	성취도 A 과목 비율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OOO 고등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4. 기타 공고문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응시자 서약: 응시자 본인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차후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면직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응시자 성명

(서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p>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생활기록부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 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생활기록부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2026. . .</p> <p>성명: (인)</p>	<p>2026. . .</p> <p>성명: (인)</p>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①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6년도 제1·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②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 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
▼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를 울산광역시 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접수여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임용시험) 2026.4.13.(월) 09:00~2026.4.17.(금) 18:00까지 □ (제2회 임용시험) 2026.8.24.(월) 09:00~2026.8.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5 참조) 2) 장애인증명서 1부(인터넷 정부24,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3)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소 : (우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제공여부 안내(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052-210-5723~28)

③ 편의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아래 ④항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편의지원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점자문제지는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직렬만 제공됩니다.(일반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아래 ⑤항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5.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52-210-5723~5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지체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6급	
뇌포편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시각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5급 1호
		·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기존 5급 2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0이하인 사람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0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해당 항목 장애유형(기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⑤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6년 4월 17일	2026년 8월 28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22년 4월 18일 이후	2022년 8월 29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주수 또는 예정일,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 2호)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 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 서식 1. 편의지원 신청서(뇌병변·상지 지체장애) 1부.
2. 편의지원 신청서(하지 지체장애) 1부.
3. 편의지원 신청서(시각장애) 1부.
4. 편의지원 신청서(청각장애) 1부.
5. 편의지원 신청서(기타장애 및 임신부) 1부.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제○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시각장애 ()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1.7배)		
	시험시간 연장(1.5배)		
	보조공학기기 지참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